

[입찰공고] 채권추심업체 선정 공고

2024. 3. 25

신한금융플러스 채권추심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1. 입찰 개요

1.1 입찰목적 및 방법 : 채권추심업체 선정을 위한 일반 경쟁 입찰

1.2 입찰일정

| 구분 | 일정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입찰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| 2024.03.25 ~ 04.05 | 홈페이지 공시 |
| 세부 계약조건 협의 | 2024.04.08 ~ 04.19 | |
| 계약체결 | 2024.04.22 ~ 04.26 | |
| 위탁업무 개시 | 2024.05.01 | |

※ 사정 변경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

1.3 계약기간 : 2024.05.01 ~ 2025.04.30(조건부 1년단위 자동갱신)

1.4 입찰목적 : 회사의 채무명目が 확보된 담보채권 또는 부담보채권의 추심업무

1.5 연간 추심채권 위탁 규모 : 약 5억원 내외(변동 가능성 있음)

2. 입찰 자격

2.1 입찰 참가 자격 :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법인
- 최근년도 결산월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법인
- 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 회원사에 가입한 법인

2.2 입찰 참가 제한 : 공고개시일 현재 부도, 파산, 회생, 법정관리, 신용관리대상 정보상 채무불 이행 상태, 국세 또는 지방세, 4대보험료 미납 등 기타 위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

3. 평가 방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3-1 평가방법

-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기재된 내용만 평가함
- 회사 내부 평가기준(업무 프로세스 편의성, 채권회수율 또는 실적, 채권추심수수료율 등)에 따라 (정량, 정성) 평가함
- 제출자료에 허위 작성, 자격미달,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배제함

3-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세부내용 협의

-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지함
-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 계약내용을 협의하여 최종 낙찰 업체로 선정함
-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 결렬시 차순위업체와 협의 진행함

3-3 계약체결

- 최종 선정된 낙찰업체와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하며, 계약 체결일은 추후 지정하여 통보 예정임
- 계약기간은 최초 1년간을 기간으로 하며, 이후 1년단위로 조건부 자동갱신 조항 포함함

4. 제안서 제출

4.1 제출기한 : 2024. 3. 29. (금) 15시까지

4.2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 (hpb01003@shinhanfp.kr)

(회사담당자) 신한금융플러스(주) 준법감시인 강광현 (02-6949-4320)

4.3 제출서류

| 필수서류 | 추가서류 |
|---|--|
| ○제안서 1부 ○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○법인등기부등본(3개월이내 발행분) 1부 ○법인인감증명서 1부 ○사용인감계(사용인감사용시) 1부 | ○결산재무제표(최근 3기) 각 1부 ○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○청렴계약이행서약서(당사 양식) 1부 ○보안관리약정서(당사 양식) 1부 ○통장사본 1부 |
| 필수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| 추가서류는 우선협상대상자만 제출 |

4.4 제안서 내용 : 자유 양식에 의하되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- 제안업체 일반 현황
- 사업수행 방안 : 채권 추심 프로세스, 채권 회수율 또는 실적, 개인정보보호 프로세스 등
- 가격 제안 : 채권추심 수수료율(담보채권, 부담보채권 구분), 기타 비용 등

4.5 기타사항

-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입찰참가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
- 회사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제안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,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- 회사는 제안 평가 결과 적정한 업체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찰시킬 수 있음

별첨 1. 청렴계약이행서약서

2. 개인(신용)정보 처리업무 보안관리 약정서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